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·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법원이 도산절차를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(안 제108조제1항 신설)
- 법원이 상담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,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8조제2항 신설)

- 신용정보제공 요구의 범위와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규정함(안 제108조제3항 신설)
-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8조제 4항 신설)

4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편(제10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편 보칙

제108조(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)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·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·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,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·상담 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·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6편 보칙</p> <p>제108조(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)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·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·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,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·상담 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
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
내·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
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
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
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349